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0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이만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6. 23.

다. 회 부 일: 2025.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Ⅲ. 검토의견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u> 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인구감소지역</u> 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단서 신설>	⑦ ----- ----- ----- <u>인구감소지역</u>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u>특별재난지역</u> 에----- ----- ----- <u>인구감소지역</u> 또는 <u>특별재난지역</u> 을----- ----- ----- <u>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지</u>

⑧ (생략)	<u>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정한다.</u> ⑧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제도를 두고, 관광지 및 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관광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고,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기준, 규모, 및 사업주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1)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 개요 >

구 분	관 광 지	관 광 단 지
정의 (법 제2조)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u>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u> (지자체 개발 주도)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u>관광거점지역</u>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 방식)
지정 기준	○면적기준: 해당없음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구비	○면적기준: 50만㎡ 이상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의시설을 갖추고, <u>숙박시설 1종 이상</u>,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
지정절차 (법 제52조)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 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필요	좌 동
사업시행자 (법 제54조)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공사 등 공공법인, 민간개발자
세제 지원 등 (개별법)	① 개발부담금 면제 ②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함) ③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④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30% 이내) ⑤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 50만㎡ 이상 관광지에 한함)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에 한함) ⑥ 취득세 일부 감면(50% 이내)
지정현황 (’25.5.)	225개소 (전체 118km ² , 1개소 평균 약 52.4만㎡)	55개소 (전체 161km ² , 1개소 평균 약 293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도 관광단지 지정의 면적 기준을 완화

하고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
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
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
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
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으로서,

- 이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특별재난지역 조건>

재난종류	내 용
자연재난	-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 재난이 발생한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u> 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공통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u>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u> 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따라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처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과는 그 목적이 다르며, 피해 수

습과 복구가 우선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권자를 변경하는 등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재난의 종류에 따른 특성상 자연재난은 주로 비도심, 인구 감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회재난은 대도시에서의 발생 빈도도 상당하여 동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대상 지역이 사실상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거의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 등 지정의 범위가 넓고 특별재난지역의 효력 기

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선포지역과 규모 등을 예측할 수도 없고
향후 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법률적용의 예측 가능
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자연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총 47건)

(단위 : 명, 억원)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1	제15호 태풍 루사	2002	8.30~9.1	09. 16	16개 시도 203개 시군(전국 일원)	246	5조 1,479	7조 1,452
2	제14호 태풍 매미	2003	9.12~13	09. 22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전국 일원)	131	4조 2,225	6조 3,922
3	대설피해	2004	3.4~5	03. 10	10개 시도 82개 시군구(전국 일원)	-	6,734	8,827
4	대설피해	2005	12.3~24	12. 29	9개 시도 57개 시군구(전국 일원)	14	5,206	7,213
5	제3호 태풍 에위니아	2006	7.9~29	07. 18 08. 10	7개 시도 39개 시군	62	1조 8,344	3조 5,125
6	10.22~24 호우·강풍·풍랑	2006	10.22~24	11. 15	강원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1	699	1,033
7	8.4~15 집중호우	2007	8.4~15	09. 11	강원 양구	-	322	893
8	제11호 태풍 나리	2007	9.13~16	09. 20 10. 08	제주,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16	1,592	3,636
9	7.23~26 호우	2008	7.23~26	08. 01	경북 봉화	8	464	1,156
10	7.11~16 호우	2009	7.11~16	07. 31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12	2,302	6,793
11	12.4~6 강풍·풍랑	2009	12.4~6	12. 24	충남 서천	-	70	43
12	7월 호우	2010	7.16~18, 23~24	08. 11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4	318	1,032
13	8.13~18 호우	2010	8.13~18	09. 03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1	851	2,316
14	제7호 태풍 곤파스	2010	9.1~3	09. 16	경기 화성, 충남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남 신안	6	1,674	1,793
15	12.29~1.4 대설	2010	12.29~1.4	01. 24	전남 영암	-	383	167
16	2.11~14 대설	2011	2.11~14	03. 03	강원 강릉·삼척, 경북 울진	-	360	236
17	7.7~14 호우	2011	7.7~14	08. 02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하동·산청	10	1,354	3,204
18	7.26~29 호우	2011	7.26~29	08. 08 08. 19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52	3,768	8,106
19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2011	8.6~10	08. 19 09. 02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1	2,183	4,617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 피해	피해액	복구비
20	제14·15호 태풍 덴빈·볼라벤	2012	8.25~30	09. 0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5	6,366	10,113
				09. 0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09. 05	광주 남구, 전북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무안, 장성, 제주			
				09. 13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 여수, 구례, 화순, 함평			
21	제16호 태풍 산바	2012	9.16~17	09. 26	경북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경남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남 여수, 고흥(15개 지역)	2	3,657	9,175
22	7.11~15, 7.18 호우	2013	7.11~15, 18	07. 27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1	940	2,425
23	7.22~23 호우	2013	7.22~23	08. 09	경기 이천·여주	3	625	1,321
24	8.25 호우	2014	8.25	09. 05	부산 북, 금정, 기장, 경남 창원, 고성	2	1,131	4,449
25	9.12 지진	2016	9.12	09. 22	경북 경주		110	145
26	제18호 태풍 차바	2016	10.3~6	10. 10	울산 북구, 울주군	9	2,150	5,049
				10. 17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양산시, 제주도			
27	7월 호우	2017	7.14~16	07. 27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6	872	2,876
28	11.15 지진	2017	11.15	11. 20	경북 포항시	-	850	1,800
29	6.26~7.4 태풍, 호우	2018	6.26~7.4	07. 18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	1	64	370
30	제19호 태풍 솔릭, 8.26~9.1 호우	2018	8.23~24, 8.26~9.1	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 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2	507	1,338
31	제25호 태풍 콩레이	2018	10.4~7	10. 24	전남 고흥 (동일면), 완도 (청산면, 소안면) 경북 영덕군, 경주 (외동읍, 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 남부면)	2	549	2,360
32	제13호 태풍 링링	2019	9.6~7	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 (흑산면)	3	334	1,590
33	제18호 태풍 미탁	2019	10.1.~4.	10.10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15	1,677	9,388
				10.17	강원 강릉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 (망상동), 전남 해남군, 진도 (의신면), 경북 경주·성주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 피해	피해액	복구비
34	7.28~8.11 호우	2020	7.28~8.11	8.7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음성·제천, 충남 아산·천안	36	10,371	34,277
				8.13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8.24	20개 시군구 19개 시군구의 36개 읍면동			
35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2020	9.1~9.3, 9.7	9.15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2	2,214	6,063
				9.23	강원 강릉·인제·고성, 경북 포항·경주 9개 시군구의 19개 읍면동			
36	7.5~8 집중호우	2021	7.5~8	7.22	전남 장흥·해남·강진 진도군·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4	355	1,804
37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2021	8.23~24	9.6	경북 포항시	1	211	1,050
38	8.8~17. 호우	2022	8.8~17.	8.22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충남 부여군·청양군	19 (사망 16, 실종 3)	3,154	8,324
				9.1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전체),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39	제11호 태풍 힌남노	2022	9.3~9.7	9.7	경북 포항시·경주시	11	2,440	7,802
				9.2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40	12.21~24. 대설·한파·강풍	2022	12.21~24.	1.11	전북 순창군 쌍치면	-	149	52
41	6.27~7.27 호우	2023	6.27~7.27.	7.19.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세종 전북 김제시 죽산면	51 (사망 48, 실종 3)	7,513	17,130
				8.14.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전체),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 피해	피해액	복구비
42	제6호 태풍 카눈	2023	8.9~11.	8.14.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	558	1,106
				8.29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43	농작물 냉해	2023		8.14.	경북 의성군 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 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1,104	1,273
44	7.8.~19. 호우	2024	7.8.~19.	7.15.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5 (사망 4, 실종 1)	3,182	9,239
				7.25.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8.13.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45	9.19.~21. 호우	2024	9.19.~21.	10.15.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5 (사망 1)	711	1,137
46	11.26.~28. 대설·강풍·풍랑	2024	11.26.~28.	12.18.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6 (사망 5, 부상 1)	4,509	1,484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 피해	피해액	복구비
47	7.16.~20. 호우	2025	7.16.~20.	7.22.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8.6.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총 15건)

재난명		발생일	선포일	선포지역	피해 및 복구내용
1	삼풍백화점 붕괴	'95. 6. 29.	'95. 7. 19.	서울 서초구	■ 인명: 1,439명(사망 502, 부상 937)
					■ 재산: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 업체 물품파손 등
2	동해안 산불	'00. 4. 7. ~ 4. 15.	'00. 4. 17.	강원 (고성, 강릉, 동해, 삼척)	■ 복구지원금: 3,585억원 (보상금 3340.8억, 직접지원 69.5억, 간접지원(금융) 86.2억, 간접지원(세제) 68.7억)
					■ 인명: 17명(사망 2, 부상 15)
3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03. 2. 18.	'03. 2. 19.	대구 중구	■ 재산: 1,072억원 - 건축물 808동, 가축 6,068마리, 농기계 1,328대, 산림 23,794ha
					■ 복구지원금: 1,671억원 (직접 1,351억, 간접 320억)
4	양양산불	'05. 4. 4. ~ 6.	'05. 4. 7.	강원 양양	■ 인명: 343명(사망 192, 부상 151)
					■ 재산: 614.8억원 - 지하철 324억, 중앙로역 246억, 상가피해 167건 44.8억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07. 12. 7.	'07. 12. 11.,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 복구지원금: 1,605억원
					■ 이재민: 163가구 418명
6	양양산불	'05. 4. 4. ~ 6.	'05. 4. 7.	강원 양양	■ 재산: 394억원 - 주택 163동 5,364백만원, 비닐하우스 19동 10백만원, 산림 973ha 등
					■ 복구지원금: 296억원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07. 12. 7.	'07. 12. 11.,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 원유 12,547kl
					■ 지원규모: 14,420억원 - 직접지원금 1,584억원 - 간접지원금 12,836억원
8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2. 9. 27.	'12. 10. 8.	전남 (신안, 무안, 영광)	■ 배·보상금: 4,329억원
					■ 인명피해: 23명(사망 5, 부상 18) - 검진/치료 인원 12,243명
9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14. 4. 16.	'14. 4. 21.	경기 안산, 전남 진도	■ 재산피해: 농작물 196ha, 가축 4,015두 등
					■ 복구지원금: 554억원
10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14. 4. 16.	'14. 4. 21.	경기 안산, 전남 진도	■ 인명피해: 사망 299명, 미수습 5명
					■ 재산피해: 2,435억원
11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14. 4. 16.	'14. 4. 21.	경기 안산, 전남 진도	■ 배·보상금('21.8): 1,135억원 ※ 35차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재난명	발생일	선포일	선포지역	피해 및 복구내용
8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19. 4. 4.	'19. 4. 6.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 인명피해: 3명(사망 2, 부상 1) - 재산피해: 1,291억원 (공공 988, 사유 303) - 주택 553동,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축산시설 12개소, 산림 2,832ha 등 - 복구지원금 : 1,853억원
9	코로나 19	'20. 1. 20.~	'20. 3. 15.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 인명피해('20.3.15. 기준): - 대구 6,031명, 경산 521명, 청도 141명, 봉화 60명 - 복구지원금: 4,000억원 (대구 3,000, 경북 1,000)
10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2. 3. 4. ~ 13.	'22. 3. 6. 울진, 삼척	- 이재민: 408가구 587명 - 재산: 2,261억원(공공 1,948, 사유 313) -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막 95개소, 양봉 63농가, 산림 20,523ha 등 - 복구지원액: 4,170억원(공공 3,984, 사유 186)
		'22. 3. 5. ~ 8.	'22. 3. 8. 강릉, 동해	
11	이태원 사고	'22. 10. 29.	'22. 10. 30. 서울 용산구	- 인명피해('23.3.31. 기준): 사망 159명, 부상 330명 - 복구지원금: 61억원 (서울 34, 경기 16, 그 외 지역 11)
12	'23년 4월 산불	'23. 4. 2 ~ 4.	'23. 4. 5. 대전 서구, 옥천, 홍성, 당진, 금산,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34명(중상1, 경상33) - 이재민: 339가구 667명 - 재산: 684억원(공공 374, 사유 310) - 주택 268동, 농기계 1,107대, 농·축산·임업시설 291건, 산림 3,723ha 등
		'23. 4. 11.	'23. 4. 12. 강릉	복구지원액: 808억원(공공 663, 사유 145)
13	12.29. 여객기 참사	'24. 12. 29.	'24.12.29. 전남 무안군	- 인명피해: 사망 179명, 부상 2명 - 복구지원액: 50.4억원
14	3.6. 전투기 오륙 사고	'25. 3. 6.	'25. 3. 8.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재산피해: 건축물 210건, 농기계 49건, 차량 25대, 농업·축산시설 50건 등 ※ '25.3. ndms 접수 기준
15	경북·경남· 울산 산불	'25. 3. 21. ~ 30.	'25.3.22. 경남 산청	인명피해: 183명(사망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25.3.24.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	재산피해: 1조 818억원(공공 5,643, 사유 5,175) - 주택 3,848동, 농·수산물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25.3.27. 경북 안동, 청송,영양, 영덕	복구지원액: 1조 8,809억원 (공공 1조 3,855억, 사유 4,954억)